

TESD 안전진단 전문기관  
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 
확인하세요.



(주)삼우통상  
삼우이엔지(주)

(주)삼우통상  
삼우이엔지(주)

존재가치, 핵심가치, 미래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기업

# TESD 시설물 안전진단

교량 및 터널 안전진단 전문기관    건축 안전진단 전문기관

- 교량
- 터널
- 건축물
- 응벽
- 절토사면
- 수리시설
- 항만시설
- 공동구

## 최상의 서비스와 신뢰를 약속합니다.

### 시설물 안전법

- [시설물안전법 제11조] 정기안전점검
- [시설물안전법 제12조] 정기안전점검
- [시설물안전법 제13조] 정기안전점검

### 건축물 관리법

- [건축물관리법 제13조] 정기점검
- [건축물관리법 제3조] 정기점검
- [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] 정기점검

## 건축물 관리법 정기안전점검 주요 항목



※ 건축물 면적 및 사용기간에 따라 점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

문의처

(주)삼우통상 TESD 안전진단 전문기관  
대표번호 \_ 1644-6403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73(주안동)  
삼우빌딩 2층  
Tel \_ 032)235-0077  
Fax \_ 032)867-8083  
Homepage \_ <https://tesd.35com.com>  
Email \_ [eng@35com.com](mailto:eng@35com.com)

삼우이엔지(주) TESD 건축/토목 안전진단 전문기관  
대표번호 \_ 1566-7943

시흥주소)  
경기도 시흥시 새재로7번길 6-2 301호(장현동 영재빌딩)  
Tel \_ 031)435-3737  
Fax \_ 031)315-3530  
지사주소)  
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(심곡동)

# Total Engineering Solution of Demand 토목/건축 안전진단 전문기관

TESD는 정부공인인증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고도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, 고객과의 신뢰성, 신속성, 정확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진단기관입니다.

토목/건축 엔지니어링은 각 시설물 인프라와 상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며 주기적인 유지 관리로 에너지 절약과 안전성을 비롯한 시설물의 가치를 향상 시킵니다.



고객과의 신뢰성

+



문제해결의 신속성

+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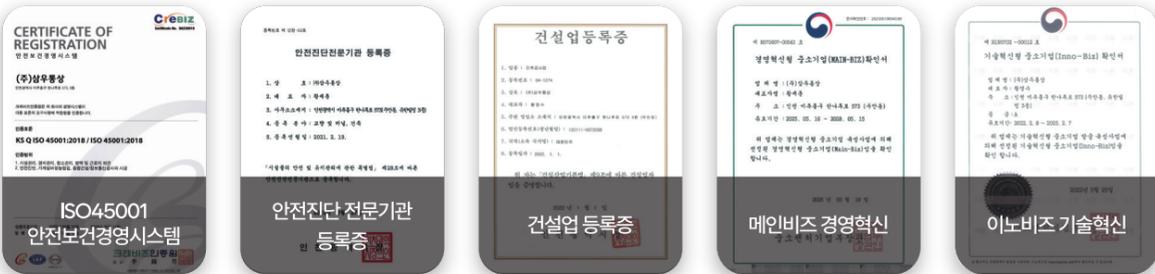
정밀진단을 통한 정확성

TESD는 최고의 기술진과 함께 철저한 프로젝트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합니다.

## 업무영역

- 신축건축물의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
- 기존시설물의 정기, 정밀점검 및 진단
- 노후시설물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, 보강설계

## 주요 특허 및 인증서



## 준공 실적 및 용역 수주

- 내진성능평가 부산남부발전소
- 건축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
- 건축 인천 검단신도시
- 건축 SK바이오사이언스
- 토목 인천발KTX 증축
- 토목 문경시 스마트 인프라



## Building Safety Examination

#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토목/건축 안전점검 전문기관



건축물 유지·관리를 통해 건물의 생애주기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화재사고, 붕괴사고 등 건물 내부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. TESI 건축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적용합니다.

## 건설기술진흥법

건설기술진흥법은 목적물의 구조체 안전과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가시설물 및 건설 장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

- 구조체 안전점검** 교량·터널·건축물·옹벽·철도사면·공동구  
·구조체공사의 공정시기별로 2회 ~ 5회 점검을 수행함
- 가시설물 안전점검** 구조안전성검토가 필요한 현장가설구조물, 「건설기술진흥법」시행령 제 101조의 2  
·법적 점검대상인 현장가시설물에 대하여 2회이상 점검을 수행함
- 건설장비 안전점검** 향타기·항발기·천공기·타워크레인  
·법적 점검대상인 건설현장장비에 대하여 2회이상 점검을 수행함
- 인접건물 사전·후 조사** 건설현장의 인접시설물  
·건설현장에 인접한 시설물중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조사와 사후 계속 조사를 수행함

## 시설물 안전법

[시설물안전법 제 11조] 안전점검의 실시, [시설물안전법 제 12조] 정밀안전진단의 실시

- 정기안전점검** 1,2,3종 시설물 : 반기 1회 (안전등급에 따라 차등실시), 육안점검
- 정밀안전점검** 1,2종 건축물 : 3년에 1회(안전등급에 따라 차등실시), 육안점검+노후도평가  
1,2종 건축물 외 : 2년에 1회(안전등급에 따라 차등실시), 육안점검+노후도평가
- 정밀안전진단** 1종 시설물 : 5년에 1회(안전등급에 따라 차등실시) 육안점검+노후도평가+구조내력평가

[시설물안전법 제 40조] 시설물의 성능평가

- 성능평가**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3에 해당되는 시설물 : 5년에 1회  
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위하여 요구되는 성능(안전성, 내구성, 사용성)을 종합평가

## 하자만료점검

하자란 공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·침하·파손·들뜸·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·기능상·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

- ★ 공동주택 관리법
- ★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별표4\_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
- 2년차 마감공사** 미장·수장·도장·도배·타일·내부석·옥내가구·주방기구·가전제품공사
- 3년차 마감공사** 옥외급수·냉난방·공기조화설비·급배수·가스설비·수장목·창호·조경·전기설비  
신재생에너지설비·정보통신·홈네트워크·소방설비·단열·잡철공사
- 5년차 마감공사** 대지조성·철근콘크리트·철골·조적·지붕·방수공사
- 10년차 마감공사** 기초·지정공사